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1/ 전송(02)790-8911  
보험국 보험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김용덕[6571]/E-mail 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7659호

시행일자 2024. 10. 10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산정기준 위반(2차)」 자율점검 운영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-283(2024. 10. 8.)

3. 상기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「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산정기준 위반(2차)」 자율점검 운영을 실시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온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대상기간 : 6개월 진료분(기관별 상이)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 확대 실시

나. 자율점검 통보일자 : 2024. 10. 10.

다. 주요내용

-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여부 점검
-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시 여부 및 횟수가 동일한지 점검

#붙임자료 :

- 1)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-283(2024. 10. 8.) 공문 1부.
- 2) 자율점검 안내문 1부. 끝.

# 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# 수신처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